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 KOREA FESTIVAL FORUM

정 관

(사)한국축제포럼 정 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FESTIVAL FORUM 으로 한다.
-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8번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3 조(목적) 본회는 문화예술의 시대를 선도하는 축제 전문 법인으로서 국가문화융성을 위한 축제 문화콘텐츠의 조사, 연구, 개발에 관련된 산(産), 학(學), 관(官)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축제산업 융성 전략을 수립하고, 축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축제 관련 학술회의, 박람회 개최 및 국제 교류 활성화
 - 2. 축제 관련 학술연구용역, 출판 및 디자인
 - 3. 축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 4. 지속가능한 축제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 조사, 연구, 개발
 - 5. 축제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개발 및 실행
 - 6. 그 밖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관련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 2. 정회원 :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
 - 3. 준회원 :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준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회위
- 제 6 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 9 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1인

-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4조(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 한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③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제17조(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 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하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효한 통신 수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가 상반 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 또는 유효한 통신수단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7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

-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2.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내역은 다음해 3월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8조(임원의 보수) 1. 회장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본회의 상임이사 및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 **제39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 **제40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한다.
-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정제정)1.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 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번호	성 명	주 소	날인
1	김정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본동 61-44해성팰리스빌 402호	
2	조성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지길9 301호	
3	박득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현산푸른숲아파트 B02호	
4	안남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아파트 214-1105	
5	유동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71 102-604	
6	유병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41-1108	
7	정연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0길 107 4층	
8	김병호	서울시특별시 노원구 삼밭로56	
9	신명숙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904	